

노인학대예방과정(사이버교육)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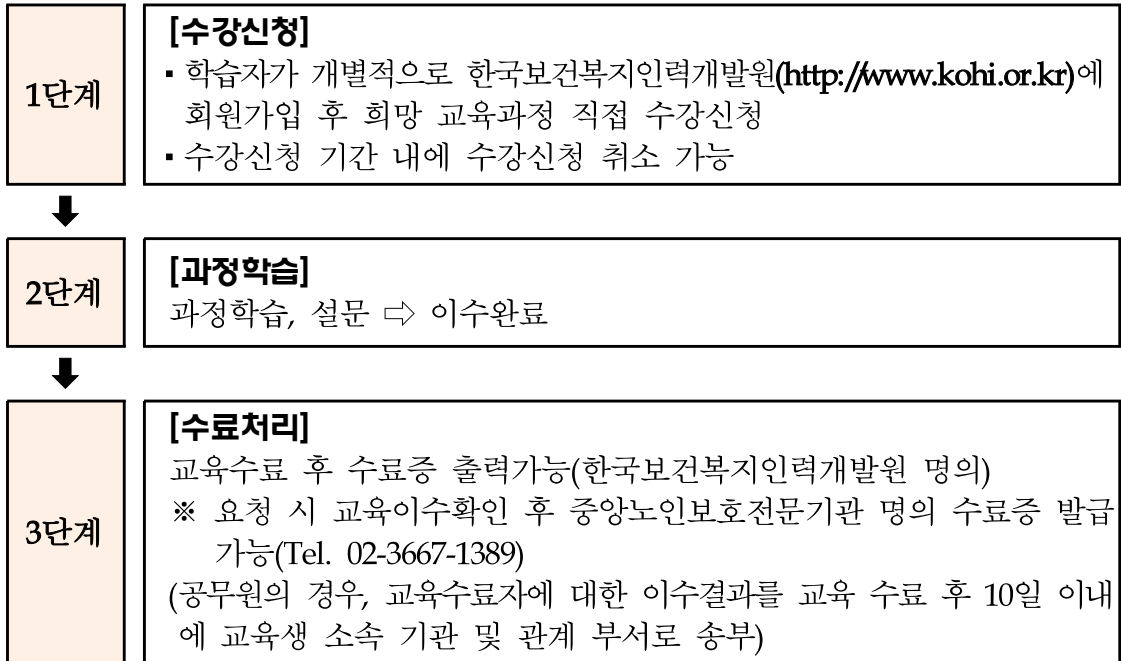
1 교육과정 안내

교육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·노인복지상담원(노인복지관, 사회복지관, 노인보호상담기관 등) ·시설종사자(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가정폭력관련시설) ·의료인(의사, 간호사 등) 		
교육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노인학대와 노인의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. ·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사례 개입 절차를 파악한다 ·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신고방법을 이해하고, 신고활성화를 도모한다 		
수강신청	교육전월 10일~25일(선착순 접수)	인원	100명
학습기간	해당월 1일~21일(5차시 : 3시간인정)		
수료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학습진도율 : 90% 이상 		

구분		주요내용
1차시	노인의 인권과 학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 인권의 개념과 특성 ○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의 관계
2차시	노인 학대의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학대의 정의와 심각성 ○ 노인학대의 유형 및 실태 ○ 노인학대 현황과 원인
3차시	시설 내 노인학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학대 유형별 시설학대의 구체적 행위 ○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
4차시	노인보호전문기관의 소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사업내용
5차시	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사례 개입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의무자의 역할 ○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권리 ○ 노인학대 사례개입 방안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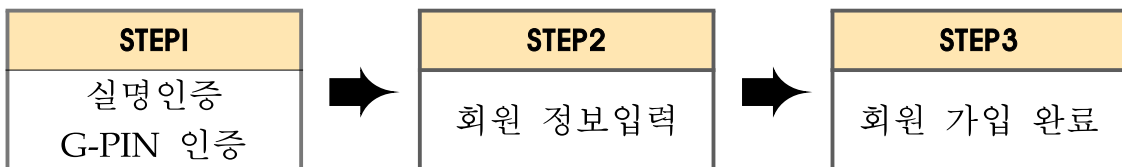
2 교육행정 사항

□ 교육과정 절차



○ 회원가입

- 개발원홈페이지(<http://www.kohi.or.kr>) 접속 후 [회원가입] 클릭



○ 수강신청

- 수강신청기간에 개발원홈페이지(<http://www.kohi.or.kr>) 접속 후 로그인
- [사이버교육] 클릭 : 현재 수강신청이 가능한 모든 과정들이 나열되며 신청란에서 '노인학대예방과정'을 선택한 후, [신청] 버튼 클릭
- 수강신청한 과정의 정보 및 승인 진행 상태는 [학습지원] → [나의 강의실] 메뉴에서 확인
 ※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수강을 취소할 수 있음.

○ 과정학습 - 로그인 이후 [나의 강의실] 클릭 → [수강중인과정] 클릭

※ 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

-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7.4.11>
-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1.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 2.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
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
 4.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
 5.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